



# 파주운정3 지구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일원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20블록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612세대 (74㎡ 142세대, 84㎡ 470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0.04.(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582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건본주택) 개관은 2024.10.04.(금)이며, 팸플릿은 건본주택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2,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 주택전시관

※ 주택전시관 방문 일정

구분	일정	비고	문의전화
사전청약 당첨자	2024.10.04.(금) ~ 10.06.(일) (운영시간 : 10:00 ~ 16:00, 점심시간 제외) * 주말, 공휴일 가능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전시관 관람 및 분양상담 * 일반고객은 해당기간 관람이 불가합니다.	031-941-0858
일반고객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2024.10.07.(월) ~ 10.13.(일) (운영시간 : 10:00 ~ 16:00, 점심시간 제외) * 주말, 공휴일 가능	일반고객 주택전시관 관람 및 분양상담	

- 파주운정3 A20블록 주택전시관 내 건본주택은 단위세대 74A형(공간유선 기본형), 84A형(공간유선 통합형)이 설치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파주운정3 A20블록 사이버 건본주택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건본주택(www.paju3a20.c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에 'ANDANTE' 단독 또는 'ANDANTE'+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 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및 제34조에 의거 지역우선 공급기준(10~11페이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파주시 1년 이상('23.10.04. 이전)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하며,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

- '23.10.04.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23.10.04.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신청자격 검증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우선공급(1순위자)	잔여공급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격당첨제한 등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세대주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과거 주택소유이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혼부부 (혼인신고일~공고일)	세대구성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불필요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 선납금포함 6백만원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신청자본인 (가입자)
소득	해당 없음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40%이하 (맞벌이 200%)	-	-
자산(부동산, 자동차)	해당 없음	(세대) 부동산 215,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0만원 이하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검증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분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2024년 9월 30일 개정·10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저축 요건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오니 청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가입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개설 완료했을 경우 본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개설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거주의무	거주의무 개시일	3년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어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접 수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선택품목 결정	계 약	
	사전청약당첨자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잔여공급)				전자	현장
'24.10.04.(금)	'24.10.15.(화) (10:00~17:00)	'24.10.16.(수) (10:00~17:00)	'24.10.17.(목)10:00 ~'24.10.18.(금)17:00 (야간접수 가능)	'24.10.31.(목) (14:00)	'24.11.02.(토) ~'24.11.08.(금) (10:00~16:00)	'24.12.10.(화) ~'24.12.11.(수) (10:00~16:00)	'24.12.17.(화)~'24.12.18.(수) (10:00~16:00)	'24.12.19.(목)~'24.12.20.(금) (10:00~16:00)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현장접수 (주말포함)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주택전시관	

-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2,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 주택전시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 기간(2024.12.17.(화)~2024.12.18.(수) 10:00~16:00)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파주운정3 A20BL 주택전시관에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 **입금체화 및 전자계약 상제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부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어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의거,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10년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어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정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1. 공급규모

■ 파주운정3지구 A20블록 : 공공분양주택 15~26층 9개동 전용면적 85㎡이하 612세대 (사전청약 474세대, 일반공급 35세대, 특별공급 103세대)

##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계	사전 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국가 유공자	기타 특별					
합 계									612	474	14	14	21	6	28	6	14	35	26	23	'27.08		
A20	074.00000	74A1	확장	74.97	22.5453	7.3825	36.1337	141.0315	54.8692	142	114	3	3	4	1	6	1	3	7	26		1	
		74A2	확장	74.83	22.5032	7.3687	36.0663	140.7682	54.7667											20		3	
084.00000	84A1	확장	84.94	25.5435	8.3642	40.9390	159.7867	62.1660	470	360	11	11	17	5	22	5	11	28	26	7			
		84A2	확장	84.74	25.4833	8.3446	40.8426	159.4105											62.0196	20		12	

- ※ 주택형별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단, 지하주차장은 무량판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천원]

형별	타입별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5%	중도금30%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보증)
					계약시	(‘26.08.21.)		입주시
074.00000	74A1	1층	기본형	401,900	20,095	120,570	186,235	75,000
			마이너스옵션	371,606	18,580	111,480	166,546	75,000
		2층	기본형	406,180	20,309	121,854	189,017	75,000
			마이너스옵션	375,886	18,794	112,764	169,328	75,000
		3층	기본형	414,730	20,736	124,418	194,576	75,000
			마이너스옵션	384,436	19,221	115,330	174,885	75,000
		4층	기본형	423,280	21,164	126,984	200,132	75,000
	마이너스옵션		392,986	19,649	117,894	180,443	75,000	
	5층 ~ 최상층	기본형	427,560	21,378	128,268	202,914	75,000	
		마이너스옵션	397,266	19,863	119,178	183,225	75,000	
	74A2	1층	기본형	401,150	20,057	120,344	185,749	75,000
			마이너스옵션	371,395	18,569	111,418	166,408	75,000
		2층	기본형	405,420	20,271	121,626	188,523	75,000
			마이너스옵션	375,665	18,783	112,698	169,184	75,000
3층		기본형	413,950	20,697	124,184	194,069	75,000	
		마이너스옵션	384,195	19,209	115,258	174,728	75,000	
4층		기본형	422,490	21,124	126,746	199,620	75,000	
	마이너스옵션	392,735	19,636	117,820	180,279	75,000		
5층 ~ 최상층	기본형	426,760	21,338	128,028	202,394	75,000		
	마이너스옵션	397,005	19,850	119,100	183,055	75,000		
084.00000	84A1	1층	기본형	455,350	22,767	136,604	220,979	75,000
			마이너스옵션	421,028	21,051	126,308	198,669	75,000
		2층	기본형	460,190	23,009	138,056	224,125	75,000
			마이너스옵션	425,868	21,293	127,760	201,815	75,000

형별	타입별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5%	중도금30%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6.08.21.)		
084.00000	84A1	3층	기본형	469,880	23,494	140,964	230,422	75,000
			마이너스옵션	435,558	21,777	130,666	208,115	75,000
		4층	기본형	479,570	23,978	143,870	236,722	75,000
			마이너스옵션	445,248	22,262	133,574	214,412	7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84,420	24,221	145,326	239,873	75,000
			마이너스옵션	450,098	22,504	135,028	217,566	75,000
	84A2	1층	기본형	454,270	22,713	136,280	220,277	75,000
			마이너스옵션	420,574	21,028	126,172	198,374	75,000
		2층	기본형	459,100	22,955	137,730	223,415	75,000
			마이너스옵션	425,404	21,270	127,620	201,514	75,000
		3층	기본형	468,770	23,438	140,630	229,702	75,000
			마이너스옵션	435,074	21,753	130,522	207,799	75,000
		4층	기본형	478,430	23,921	143,528	235,981	75,000
			마이너스옵션	444,734	22,236	133,420	214,078	7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83,270	24,163	144,980	239,127	75,000		
마이너스옵션	449,574	22,478	134,872	217,224	75,000			

■ 사전청약당첨자 의 당첨자 대상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천원]

형별	타입별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10%	1차 중도금15%	2차 중도금15%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5.10.21.)	(‘26.08.21.)		
074.00000	74A1	1층	기본형	401,900	40,190	60,285	60,285	166,140	75,000
			마이너스옵션	371,606	37,160	55,740	55,740	147,966	75,000
		2층	기본형	406,180	40,618	60,927	60,927	168,708	75,000
			마이너스옵션	375,886	37,588	56,382	56,382	150,534	75,000
		3층	기본형	414,730	41,473	62,209	62,209	173,839	75,000
			마이너스옵션	384,436	38,443	57,665	57,665	155,663	75,000
	4층	기본형	423,280	42,328	63,492	63,492	178,968	75,000	
		마이너스옵션	392,986	39,298	58,947	58,947	160,794	7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27,560	42,756	64,134	64,134	181,536	75,000	
		마이너스옵션	397,266	39,726	59,589	59,589	163,362	75,000	
	74A2	1층	기본형	401,150	40,115	60,172	60,172	165,691	75,000
			마이너스옵션	371,395	37,139	55,709	55,709	147,838	75,000
		2층	기본형	405,420	40,542	60,813	60,813	168,252	75,000
			마이너스옵션	375,665	37,566	56,349	56,349	150,401	75,000
3층		기본형	413,950	41,395	62,092	62,092	173,371	75,000	
		마이너스옵션	384,195	38,419	57,629	57,629	155,518	75,000	
4층		기본형	422,490	42,249	63,373	63,373	178,495	75,000	
		마이너스옵션	392,735	39,273	58,910	58,910	160,642	7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26,760	42,676	64,014	64,014	181,056	75,000		
마이너스옵션	397,005	39,700	59,550	59,550	163,205	75,000			
084.00000	84A1	1층	기본형	455,350	45,535	68,302	68,302	198,211	75,000
			마이너스옵션	421,028	42,102	63,154	63,154	177,618	75,000
		2층	기본형	460,190	46,019	69,028	69,028	201,115	75,000
			마이너스옵션	425,868	42,586	63,880	63,880	180,522	75,000
		3층	기본형	469,880	46,988	70,482	70,482	206,928	75,000
			마이너스옵션	435,558	43,555	65,333	65,333	186,337	75,000
	4층	기본형	479,570	47,957	71,935	71,935	212,743	75,000	
		마이너스옵션	445,248	44,524	66,787	66,787	192,150	7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84,420	48,442	72,663	72,663	215,652	75,000	
		마이너스옵션	450,098	45,009	67,514	67,514	195,061	75,000	
	84A2	1층	기본형	454,270	45,427	68,140	68,140	197,563	75,000
			마이너스옵션	420,574	42,057	63,086	63,086	177,345	75,000
		2층	기본형	459,100	45,910	68,865	68,865	200,460	75,000
			마이너스옵션	425,404	42,540	63,810	63,810	180,244	75,000
3층		기본형	468,770	46,877	70,315	70,315	206,263	75,000	
		마이너스옵션	435,074	43,507	65,261	65,261	186,045	75,000	
4층		기본형	478,430	47,843	71,764	71,764	212,059	75,000	
		마이너스옵션	444,734	44,473	66,710	66,710	191,841	7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83,270	48,327	72,490	72,490	214,963	75,000		
마이너스옵션	449,574	44,957	67,436	67,436	194,745	7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총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총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4. 추가선택품목

- 추가선택품목비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		실별 구분 가격 [단위 : 천원]						
타입	내역	계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주방/식당
74A1	기본공사비(A)	70,491	26,244	492	15,785	16,059	9,816	2,095
	확장공사비(B)	77,379	27,152	2,279	16,062	17,975	10,552	3,359
	계약자부담액(B-A)	<b>6,888</b>	908	1,787	277	1,917	735	1,264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b>5,855</b>	772	1,519	236	1,629	625	1,074
74A2	기본공사비(A)	70,383	26,274	492	15,802	15,892	9,827	2,095
	확장공사비(B)	77,260	27,180	2,279	16,079	17,801	10,562	3,359
	계약자부담액(B-A)	<b>6,878</b>	906	1,787	276	1,909	735	1,264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b>5,846</b>	771	1,519	235	1,623	625	1,074
84A1	기본공사비(A)	79,360	18,303	492	12,323	11,465	6,261	30,516
	확장공사비(B)	86,899	18,741	2,279	12,316	13,112	6,803	33,648
	계약자부담액(B-A)	<b>7,538</b>	438	1,787	-8	1,647	542	3,132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b>6,408</b>	373	1,519	-6	1,400	461	2,662
84A2	기본공사비(A)	79,375	18,293	492	12,317	11,458	6,258	30,558
	확장공사비(B)	86,931	18,735	2,279	12,311	13,108	6,801	33,697
	계약자부담액(B-A)	<b>7,555</b>	442	1,787	-5	1,649	543	3,139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b>6,422</b>	376	1,519	-4	1,402	462	2,668

-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확장 여부 선택은 불가합니다.
-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상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 등·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등·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	구분	발코니확장비용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6.08.21.)	잔금 (입주시)
74A1	기본형	6,888	500	2,000	4,388
	마이너스옵션	5,855	500	2,000	3,355
74A2	기본형	6,878	500	2,000	4,378
	마이너스옵션	5,846	500	2,000	3,346
84A1	기본형	7,538	500	2,000	5,038
	마이너스옵션	6,408	500	2,000	3,908
84A2	기본형	7,555	500	2,000	5,055
	마이너스옵션	6,422	500	2,000	3,922

#### ■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	구분	발코니확장비용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차 ('25.10.21.)	중도금 2차 ('26.08.21.)	잔금 (입주시)
74A1	기본형	6,888	1,000	1,000	1,000	3,888
	마이너스옵션	5,855	1,000	1,000	1,000	2,855
74A2	기본형	6,878	1,000	1,000	1,000	3,878
	마이너스옵션	5,846	1,000	1,000	1,000	2,846

주택형	구분	발코니확장비용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차 (‘25.10.21.)	중도금 2차 (‘26.08.21.)	잔금 (입주시)
84A1	기본형	7,538	1,000	1,000	1,000	4,538
	마이너스옵션	6,408	1,000	1,000	1,000	3,408
84A2	기본형	7,555	1,000	1,000	1,000	4,555
	마이너스옵션	6,422	1,000	1,000	1,000	3,422

■ 공간선택(무상옵션) 안내

-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4.12.10.(화)~‘24.12.11.(수), 10:00~16:00)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태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시 공간확장형이 적용됩니다.

주택형	선택사항(아래 유형 중 택1)		비고
	기본형	공간확장형	
74A1	①침실2/침실3 분리	②침실2+침실3 통합	①기본형 또는 ②공간확장형 중 1가지 선택
74A2			
84A1			
84A2			

■ 추가선택품목 안내

-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4.12.10.(화)~‘24.12.11.(수)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선택 불가능합니다.
- \* 옵션 구조를 공고문에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움에 따라 품목별 정확한 내용은 팸플릿,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각 세대 타입별(74A1, 74A2 / 84A1, 84A2)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 등에 따라 벽체 두께 차이가 있으나 면적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각 세대 타입별 옵션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 \* 74A1, 74A2, 84A1, 84A2 타입은 1-1 미선택시(기본형)에도 침실 및 알파룸 사이에 경량벽체가 설치됩니다.(팸플릿 확인요망)
- \* 1-1 옵션 미선택시(기본형)에 알파룸 공간은 제공되며(시스템선반 미설치), 도어(데코시트 마감)는 미설치됩니다.(팸플릿 확인요망)
- \* 1-1 옵션 선택시 은경(전신거울)이 함께 추가 설치됩니다.(팸플릿 확인요망)
- \* 1-1 옵션 선택시 74A1, 74A2 타입은 드레스룸 창문 커튼박스에 의해 일부 시스템선반이 창문으로부터 이격되어 설치되며, 드레스룸의 창문 일부가 시스템선반에 의해 간섭됩니다.
- \* 3-1 옵션 선택시 74A1, 74A2 타입은 가구판넬(EP판)과 인테리어 시트판넬이 만나는 부위는 마감재 두께에 따라 단차가 발생합니다.
- \* 3-1 옵션 선택시 74A1, 74A2 타입은 가구판넬(EP판)과 다용도실 문선이 만나는 부위는 시공오차에 의해 문선크기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 3-2 옵션 선택시 74A1, 74A2 타입은 벽체 도기질 타일과 벽체 마감판(인테리어 시트판넬)이 만나는 부위는 마감재 두께 차이에 따라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84A1, 84A2 타입은 벽체 마감판(인테리어 시트판넬)이 다용도실 문선보다 돌출 될 수도 있습니다.
- \* 3-3 옵션 선택시 74A1, 74A2 타입은 벽체 엔지니어드스톤과 벽체 마감판(인테리어 시트판넬)이 만나는 부위는 마감재 두께에 따라 단차가 발생합니다.
- \* 3-3 옵션 선택시 마감재 두께 차이에 따라 엔지니어드스톤 벽체가 다용도실 문선보다 돌출되어 시공됩니다.
- \* 4-1 옵션 선택시 현관중문은 신발장 방향으로 열립니다.
- \* 4-1 옵션 선택시 현관중문 설치를 위한 마루귀를 일부가 이동됩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중 시스템어컨을 선택할 경우 기본에어컨 냉매매립배관(거실+침실1) 및 벽걸이에어컨 콘센트(침실1)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6-2 옵션 선택시 아드웰 상부에 커튼박스가 설치되며, 미선택시 커튼박스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 6-2 옵션 선택시 아드웰 간접조명 설치를 위한 천장의 단차부위와 거실창 커튼박스가 연결시공 됩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시 9-1 및 9-2의 마감재 디자인 패키지에 따라 마감재의 색상이 변경되며, 각 부위에 대하여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안내 및 비용 납부 안내

(단위:천원)

주택형	유형	기본형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비고	
				합계	계약금 5% (계약시)	중도금 30% (‘26.08.21.)		잔금 (입주시)
74A1 · 74A2	침실1 및 알파룸	미설치	1-1. 파우더룸 + 드레스룸 (화장대+벽체+도어+시스템선반+은경판넬)	2,819	140	844	1,835	
			1-2. 침실1 불박이장	2,853	142	854	1,857	
	침실3	미설치	2-1. 침실3 반침장	1,345	67	402	876	* 2-1은 공간선택 ①기본형 선택시 선택가능
	주방	미설치	3-1. 냉장고장 + 김치냉장고장 + 키큰장 + 벽체 마감판(인테리어 시트판넬)	2,122	106	636	1,380	* 3-2, 3-3 중 택 1
			3-2. 고정형 아일랜드 장(상판 MMA) + 장식장 (상판 및 뒷판 MMA) + 벽체 마감판(인테리어 시트판넬)	4,869	243	1,460	3,166	
			3-3. 주방가구(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고정형 아일랜드 장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장식장 (상판 및 뒷판 엔지니어드스톤) + 벽체 마감판(인테리어 시트판넬)	6,984	349	2,094	4,541	
			3-4. 보조주방(상부장 + 하부장 + 상판 MMA)	1,147	57	344	746	
	현관중문	미설치	4-1.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 수동)	1,375	68	412	895	
	바닥재	강화합판마루	5-1. 기능성 립카펫(6mm)	선택 시 무상옵션				

주택형	유형	기본형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비고
				합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5% (계약시)	30% (26.08.21.)	(입주시)	
74A1 · 74A2	거실 간접조명	미설치	6-1. 우물천장 간접조명	401	20	120	261	* 6-1, 6-2 중 택1
			6-2. 우물천장 + 아트월 간접조명	561	28	168	365	
	주방가전	가스쿡탑(3구)	7-1. 인덕션 3구	590	29	176	385	
	시스템 에어컨	기본에어컨 냉매매립배관 (거실+침실1)	8-1. 거실+침실1	4,355	217	1,306	2,832	* 8-1, 8-2, 8-3 중 택1 * 8-2는 공간선택 ①기본형 선택시 선택가능 * 8-3은 공간선택 ②공간확장형 선택시 선택가능
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535	376	2,260	4,899		
8-3. 거실+침실1+침실2,3 통합형	6,435	321	1,930	4,184				
마감재	-	9-1. 마감재 디자인 패키지 1 (라이트톤)		선택 시 무상옵션			* 9-1, 9-2 중 택1	
		9-2. 마감재 디자인 패키지 2 (미디엄톤)						
84A1 · 84A2	침실1 및 알파룸	미설치	11-1. 파우더룸 + 드레스룸 (화장대+벽체+도어+시스템선반+은경판넬)	4,053	202	1,214	2,637	
			11-2. 침실1 불박이장	3,107	155	932	2,020	
	침실3	미설치	2-1. 침실3 반침장	1,569	78	470	1,021	* 2-1은 공간선택 ①기본형 선택시 선택가능
	주방	미설치	3-1. 냉장고장 + 김치냉장고장 + 키큰장 + 벽체 마감판(가구판넬 EP판 + 인테리어 시트판넬)	2,319	115	694	1,510	* 3-2, 3-3 중 택 1
			3-2. 고정형 아일랜드 장(상판 MMA) + 장식장 (상판 및 뒷판 MMA) + 벽체 마감판(인테리어 시트판넬)	5,522	276	1,656	3,590	
			3-3. 주방가구 (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고정형 아일랜드 장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장식장 (상판 및 뒷판 엔지니어드스톤) + 벽체 마감판(인테리어 시트판넬)	8,212	410	2,462	5,340	
			3-4. 보조주방(상부장 + 하부장 + 상판 MMA)	1,364	68	408	888	
	현관	미설치	4-1.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 수동)	1,375	68	412	895	
			바닥재	강화합판마루	5-1. 기능성 톱카펫(6mm)	선택 시 무상옵션		
	거실 간접조명	미설치	6-1. 우물천장 간접조명	435	21	130	284	* 6-1, 6-2 중 택1
			6-2. 우물천장 + 아트월 간접조명	637	31	190	416	
	주방가전	가스쿡탑(3구)	7-1. 인덕션 3구	590	29	176	385	
시스템 에어컨	기본에어컨 냉매매립배관 (거실+침실1)	8-1. 거실+침실1	4,715	235	1,414	3,066	* 8-1, 8-2, 8-3 중 택1 * 8-2는 공간선택 ①기본형 선택시 선택가능 * 8-3은 공간선택 ②공간확장형 선택시 선택가능	
		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789	389	2,336	5,064		
		8-3. 거실+침실1+침실2,3 통합형	6,738	336	2,020	4,382		
마감재	-	9-1. 마감재 디자인 패키지 1 (라이트톤)		선택 시 무상옵션			* 9-1, 9-2 중 택1	
		9-2. 마감재 디자인 패키지 2 (미디엄톤)						

■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안내 및 비용 납부 안내

(단위:천원)

주택형	유형	기본형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비고	
				합계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10% (계약시)	15% (25.10.21.)	15% (26.08.21.)		(입주시)
74A1 · 74A2	침실1 및 알파룸	미설치	11-1. 파우더룸 + 드레스룸 (화장대+벽체+도어+시스템선반+은경판넬)	2,819	281	422	422	1,694	
			11-2. 침실1 불박이장	2,853	285	427	427	1,714	
	침실3	미설치	2-1. 침실3 반침장	1,345	134	201	201	809	* 2-1은 공간선택 ①기본형 선택시 선택가능
	주방	미설치	3-1. 냉장고장 + 김치냉장고장 + 키큰장 + 벽체 마감판(인테리어 시트판넬)	2,122	212	318	318	1,274	* 3-2, 3-3 중 택 1
			3-2. 고정형 아일랜드 장(상판 MMA) + 장식장 (상판 및 뒷판 MMA) + 벽체 마감판(인테리어 시트판넬)	4,869	486	730	730	2,923	
			3-3. 주방가구(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고정형 아일랜드 장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장식장 (상판 및 뒷판 엔지니어드스톤) + 벽체 마감판(인테리어 시트판넬)	6,984	698	1,047	1,047	4,192	
			3-4. 보조주방(상부장 + 하부장 + 상판 MMA)	1,147	114	172	172	689	
	현관중문	미설치	4-1.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 수동)	1,375	137	206	206	826	
바닥재	강화합판마루	5-1. 기능성 톱카펫(6mm)	선택 시 무상옵션						



주택형	유형	기본형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비고
				합계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10%	15%	15%	(입주시)	
74A1 · 74A2	거실 간접조명	미설치	6-1. 우물천장 간접조명	401	40	60	60	241	* 6-1, 6-2 중 택1
			6-2. 우물천장 + 아트월 간접조명	561	56	84	84	337	
	주방가전	가스쿡탑(3구)	7-1. 인덕션 3구	590	59	88	88	355	
	시스템 에어컨	기본에어컨 냉매매립배관 (거실+침실1)	8-1. 거실+침실1	4,355	435	653	653	2,614	* 8-1, 8-2, 8-3 중 택1
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535	753	1,130	1,130	4,522	* 8-2는 공간선택 ①기본형 선택시 선택가능	
8-3. 거실+침실1+침실2,3 통합형			6,435	643	965	965	3,862	* 8-3은 공간선택 ②공간확장형 선택시 선택가능	
마감재	-	9-1. 마감재 디자인 패키지 1 (라이트톤)	선택 시 무상옵션					* 9-1, 9-2 중 택1	
		9-2. 마감재 디자인 패키지 2 (미디엄톤)							
84A1 · 84A2	침실1 및 알파룸	미설치	1-1. 파우더룸 + 드레스룸 (화장대+벽체+도어+시스템선반+은경판넬)	4,053	405	607	607	2,434	
			1-2. 침실1 불박이장	3,107	310	466	466	1,865	
	침실3	미설치	2-1. 침실3 반침장	1,569	156	235	235	943	* 2-1은 공간선택 ①기본형 선택시 선택가능
	주방	미설치	3-1. 냉장고장 + 김치냉장고장 + 키친장 + 벽체 마감판(가구판넬 EP판 + 인테리어 시트판넬)	2,319	231	347	347	1,394	
			3-2. 고정형 아일랜드 장(상판 MMA) + 장식장 (상판 및 윗판 MMA) + 벽체 마감판(인테리어 시트판넬)	5,522	552	828	828	3,314	
			3-3. 주방가구 (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 고정형 아일랜드 장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장식장 (상판 및 윗판 엔지니어드스톤) + 벽체 마감판(인테리어 시트판넬)	8,212	821	1,231	1,231	4,929	* 8-2, 8-3 중 택1
			3-4. 보조주방(상부장 + 하부장 + 상판 MMA)	1,364	136	204	204	820	
	팬트리 (시스템선반, 벽판넬 미설치)	미설치	3-5. 팬트리 SET(시스템선반 + 벽판넬)	1,323	132	198	198	795	
			현관	미설치	4-1.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 수동)	1,375	137	206	206
	바닥재	강화합판마루	5-1. 기능성 롬카펫(6mm)	선택 시 무상옵션					
	거실 간접조명	미설치	6-1. 우물천장 간접조명	435	43	65	65	262	* 6-1, 6-2 중 택1
			6-2. 우물천장 + 아트월 간접조명	637	63	95	95	384	
주방가전	가스쿡탑(3구)	7-1. 인덕션 3구	590	59	88	88	355		
시스템 에어컨	기본에어컨 냉매매립배관 (거실+침실1)	8-1. 거실+침실1	4,715	471	707	707	2,830	* 8-1, 8-2, 8-3 중 택1	
		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789	778	1,168	1,168	4,675	* 8-2는 공간선택 ①기본형 선택시 선택가능	
		8-3. 거실+침실1+침실2,3 통합형	6,738	673	1,010	1,010	4,045	* 8-3은 공간선택 ②공간확장형 선택시 선택가능	
마감재	-	9-1. 마감재 디자인 패키지 1 (라이트톤)	선택 시 무상옵션					* 9-1, 9-2 중 택1	
		9-2. 마감재 디자인 패키지 2 (미디엄톤)							

###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구,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들,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욕실문틀 하부 씬,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실외기실 그릴창호
② 바닥	합판마루(롬카펫),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전기(통신) 배관 및 배선, 배선기구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우물천장 몰딩, 반자동림	경량천장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장,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및 기구, 전기(통신) 배관 및 배선
⑤ 욕실	천장재(천장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공용욕실),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욕실선반 상부 인조대리석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통신) 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아일랜드식탁,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기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통신) 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가스배관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통신) 배관 및 배선, 스위치, 매입등기구
⑧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빨래건조대	설비배관(우,오수포함) 및 기구, 세대단말기(월패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가스배관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예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예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을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통신) 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디지털도어록은 직접선택·시공시 세대단말기(월패드)와의 통신프로토콜 연동 문제 등으로 세대단말기를 통한 문열림 기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공고일 현재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 선납시점의 선납할인을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예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예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예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파주운정3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파주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 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급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10.04.)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파주시)	30%	· 공고일 현재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3.10.04. 이전부터 계속하여 파주시 거주 ('23.10.04.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4.04.04.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4.04.04.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전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사·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최소물량(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경기도→타지역 순으로 배정합니다.
-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파주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10.04.)	① 경기도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단, 남은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23.10.04. 이전부터 계속하여 파주시 거주 ('23.10.04.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6개월 미만)-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4.10.31.)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사전청약당첨자 · 파주운정3지구 내 철거주택 소유자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공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축[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다만, 세대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건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 colspan="2">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자·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li> <li>「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li> <li>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싱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 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li> </ul> </li> <li>「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부동산(건물+토지)	237,050천원 이하	258,600천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고
자동차	40,790천원 이하	44,500천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4년식 자동차를 2023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임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추첨(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추첨(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잔여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추첨(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신혼 부부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가점기준 - 가. 가구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잔여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추첨(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신생아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잔여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06,76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추첨(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304,058	7,423,620	7,897,564	8,606,954	9,316,344	10,025,73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0,506,76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1,207,214	13,197,547	14,040,114	15,301,251	16,562,389	17,823,52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1,907,665	14,022,394	14,917,621	16,257,579	17,597,538	18,937,49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4,709,469	17,321,781	18,427,649	20,082,892	21,738,135	23,393,37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5,409,920	18,146,627	19,305,156	21,039,220	22,773,285	24,507,349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b>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b> ※ <b>입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b>
생애최초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b>직계존속</b> 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b>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입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b>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b>입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b>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 표등본상 **당첨자 및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의원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의원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http://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를 정정하는 경우 사업장(사용자)에 보수 변경 요청 및 완료 후 해당 증빙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의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직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사전청약 당첨자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현재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금)]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10.04.)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던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 ※ 해당지역 전입일~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1)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 (3)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음
  -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당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파주시 1년 이상, 경기도 6개월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유지여부,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특별공급 기당첨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2024.10.04.)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10.15(화)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종서(공동인종서, 금융인종서, 네이버인종서, 토스인종서, KB국민인종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종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는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일반·특별공급 당첨에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별공급 신청」 아님)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본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유의사항

###### • 주택형 확인사항

- 사전청약시 당첨된 블록과 주택형으로만 신청하여야 하며, 타 주택형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업지구	블록	사전청약시 당첨된 주택형	본청약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	발코니 확장 여부
파주운정3	A20	74	074.00000	발코니 확장형
		84	084.00000	발코니 확장형

###### • 중복신청 금지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4.10.15.(화)]에 신청할 경우, 급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중복 신청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4.10.15.(화)]에 미신청(포기)한 경우,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2p 무주택세대구성원 참고) 중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급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해당 본청약 신청시 당첨자발표일[2024.10.31(목)] 이후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됩니다.
 

- ※ 사전청약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시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당첨자[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2024.11.02.~2024.11.08.) 내 구비서류 별도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의 본청약 당첨자 선정시 제출서류 :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참조

###### • 사전청약시 특별공급 당첨자 안내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 전매제한 및 거주 의무 사항

- 급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됨에 따라 거주 의무 개시일로부터 3년간 거주하여야 하며,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 전매제한 및 거주 의무 관련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2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파주운정3 철거주택 소유자 주택공급 대상자

### ■ 신청자격

- **철거주택 소유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인정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없는 자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10.16.(수)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기관추천」으로 신청)

###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본 유형의 경우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4.10.16.)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기제출한 희망주택형 신청서에 기재한 주택형으로 신청해야 하며, 타 주택형은 신청 불가합니다.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3.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정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경기북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서울특별시·경기도(장애인), 파주시(철거민),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방부(10년 이상 복무군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4.10.16.)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5.10.05. ~ 2024.10.04.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원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다자녀가구 추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각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의 시·군·구가 속한 시·도(경기도)에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의 시·군·구가 속한 시·도(경기도)에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 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2명 1명 0명	15 10 5 0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의 자녀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해당없음	5 5 0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해당없음	20 15 10 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미거주	15 10 5 0	공급신청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해당없음	5 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노부모부양 추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 40㎡초과]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6.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 한정한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생애최초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생애최초 추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상향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련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천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본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본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7.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신혼부부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신혼부부 추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점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되며,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점기준		점수	비고
기준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0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0명	0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가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동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 초과 5년 이하	2	
	5년 초과 7년 이하	1	
	7년 초과	0	
바.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3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2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1	
	해당없음	0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603,607원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본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본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8. 신생아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출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 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 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신생아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06,76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신생아 추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단계 추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0	
나. 미성년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생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9.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유의사항

- 분양가능상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8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위 신청자격을 갖춘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2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은 위 신청자격을 갖춘 분에게 잔여공급합니다.**

####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 40㎡초과]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 해당사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며,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1.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파주시,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IV 신청 시 확인사항

###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상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2. 전매 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4.10.31.)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에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3. 거주무의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입주자에게 거주무의가 부여**됩니다. 거주무의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거주무의 개시일부터 3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에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4.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인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p><b>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b>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p> <p>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향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p>
신청방법	<p>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함</p> <p>② 자격인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표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p>

## 6.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4.10.15(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4.10.15(화))에 미신청(포기)한 경우에는,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특별 · 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철거주택소유자,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철거주택소유자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7.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사항

###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사전청약 특별공급 당첨자 및 본청약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변경 및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II. 신청 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 사전청약 당첨자	2024.10.15.(화)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2024.10.16.(수) (10:00 ~ 17:00)		
일반공급	• 우선공급, 잔여공급	24.10.17.(목)10:00 ~24.10.18.(금) 17:00 (야간접수 가능)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 배정수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전시관에서 청약대행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청약이 어려우신 경우 파주운정3 A20블록 주택전시관(☎ 031-941-0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신청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24.10.16.(수) 오후9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 (사전청약 당첨자,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엇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b>• 사전청약당첨자</b>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p>
<p><b>• 특별공급(기관추천 등(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b>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특별공급신청(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p>
<p><b>• 일반공급</b>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일반공급신청(우선공급/잔여공급)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p>
<p><b>• 신청시간 : 10:00~17:00</b>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p>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파주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파주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당첨자)
	당첨자	예비입주자	
2024.10.31(목) 14:00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024.11.02.(토) ~ 2024.11.05.(화) 10:00~16:00	2024.11.06.(수) ~ 2024.11.08.(금) 10:00~16:00	(전자)2024.12.17.(화) ~ 2024.12.18.(수) 10:00~16:00 (현장)2024.12.19.(목) ~ 2024.12.20.(금) 10:00~16:00
	• (현장)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운정3지구 A20블록 주택전시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2) • (온라인-서류제출) - P C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고객센터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센터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하단의 '2. 당첨자(예비자) 서류제출'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계약체결) 전자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위는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변경 및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내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시어,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법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① 온라인 제출(전자파일업로드), ② 방문제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온라인 서류제출’ 서비스는 서류제출 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 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로 로그인 후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 PC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고객센터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센터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온라인 서류제출 이용 시 상기에 언급한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서류제출은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제출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온라인 서류제출이 중단될 경우 방문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방문제출은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한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7종(JPG, JPEG, GIF, PDF, TIF, TIFF, PNG, ZIP)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인터넷(PC, 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첨자(예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공공미디어터 연계)

온라인 서류제출 시, 「공공미디어터 활용을 위한 본인 행정정보 제3차 제공 요구서」에 응답(제공요구)할 경우, [연계서류 목록]에 포함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연계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는 첨부서류 파일 추가를 통해 직접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연계서류 목록(총 8종)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공공미디어터의 경우 당첨자(예비자) 본인 및 모든 세대구성원이 제공요구에 응답(세대원 본인인증)한 경우에만 연계 가능하며, 1명이라도 미응답 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세대원이 제공요구 응답절차를 진행할 경우, 당첨자(예비자) 본인이 공공미디어터 제공요구에 응답한 항목을 그대로 연동하여 제공요구 진행됩니다.

[세대원 본인인증 방법]

- PC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고객센터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내 ‘세대원 본인인증’ 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센터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내 ‘세대원 본인인증’ 탭

• ② 방문제출

-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시어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 윤정3지구 A20블록 주택전시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2) 방문하여 제출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차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사전청약 공고일(2021.10.15.)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서류	대상자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사전청약 당첨 시 지역우선으로 당첨되었으나,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특별공급(기관추천·월거주택 소유자,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당첨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월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포함)	본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차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본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⑦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칭)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10.0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⑩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⑪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⑫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정(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함하여 발급 · '08.1.1. 전에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수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 받아 입주자저촉에 가입한 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수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촉에 가입한 자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li> <li>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li> </ul> </li> <li>※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li> </ul>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인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li>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ul>
		○	③ 기본증명서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li> </ul>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li> </ul> </li> </ul>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의 경우</li> </ul>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li> </ul>
		○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li> </ul>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li> </ul>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li> </ul>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인 전 재당첨, 주택소유사실 여부 확인</li> </ul>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8> 참고)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lt;표8&gt;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li> </ul>
신생아 특별공급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li> <li>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li> <li>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ul>
		○	②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li> </ul>
		○	③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의 경우</li> </ul>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li> <li>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li> <li>※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li> </ul> </li> </ul>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li> </ul>
		○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li> </ul>
		○	⑦ 통장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육사실 증빙)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상 급여개시일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li> </ul>
		○	⑧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인 전 재당첨, 주택소유사실 여부 확인</li> </ul>

<표8>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li> <li>※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li> <li>※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li> <li>※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li> </ul>
○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포함)	본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li> <li>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li> </ul>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li> <li>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li> <li>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li> </ul>
○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본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li> <li>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li> <li>(투기·청약과열지역) '08.1.1. 전에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li> </ul>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li> <li>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li> <li>[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li> <li>(투기·청약과열지역) '08.1.1.이전에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li> </ul>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li> </ul>
○		⑦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li> <li>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li> </ul>
○		⑧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li> </ul>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⑩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li> </ul>
○		⑪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li> </ul>
○		⑫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li> </ul>

3. 계약 시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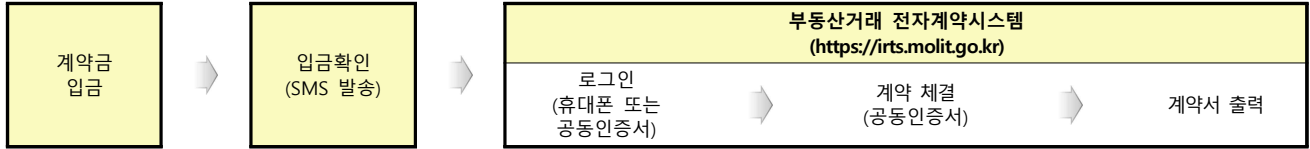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현장수납 불가) * 주택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발코니확장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전자계약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위임장(양식) * 인감도장 날인 필수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10:00~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 마이너스융선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체결 필요)**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우선/잔여)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천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자청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변경 및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을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주 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거 실	세대단말기(월패드)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욕 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낮낮이조정 세면기		기 타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24.12.19.~2024.12.20.) 내(현장계약 체결)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4. 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여건

-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사업추진여건 변화, 관계기관 및 승인기관 협의과정,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 주택건설 사업계획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인접한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준공되었으나 향후 일부 필지가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단계별 개발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일정이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착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파주운정3지구의 기반시설이 입주시기에 맞추어 건설 중에 있으나 일부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음.
- 파주운정3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 지구 내 생활편익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복합커뮤니티 등은 해당 기관 여건에 따라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설별 추진계획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함.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원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를 포함한 인근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여건, 민원 등에 따라 분량 홍보자료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은 입주예정시점과 다를 수 있음.
- 동 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변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송전탑, 전신주, 철탑,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저류시설, 비닐하우스 등) 및 구조물(지하차도, 보도육교, 생태육교, 공동구환기구, 쓰레기투입구,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을 확인 후 분량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공공지, 공공보행도로 등 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유치원 포함)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학교개교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고, 입주시 지구내 학교개교 지연될 경우 사업지구 인근학교로 배정될 수 있음.
- 지구내외 구조물(보도육교, 지상경사로 등),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에 의거 사용이 금지되며 일반 가정인 경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http://www.gdis.or.kr>)」에서 확인된 인증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

#####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파주운정3지구 조성공사 및 인근 아파트 단지공사 등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동측에는 공동주택(A19BL), 서측에는 수변공원용지, 남측에는 공동주택(A44BL) 및 학교용지, 북측에는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도시계획 도로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사면, 옹벽, 조경석 등이 설치될 예정임.
- 단지 인근으로 수변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공원조성계획은 인허가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영향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높이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북서쪽 지점(직선거리 약 700m 부근)에 오수처리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이 설치됨.
- 단지 북서쪽 지점(직선거리 약 650m 부근)에 전기공급시설이 설치됨.
- 단지 북동쪽 지점(직선거리 약 700m 부근)에 저류시설이 설치됨.
- 단지 남측 학교(초,중,고등학교) 개교 예정이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향후 운정3지구 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동측은 22m, 서측은 29.5m, 남측은 21m, 북측은 30m 도로(인도포함)가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향후 운정3지구 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로면에 명기되지 않은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에 GTX-A 철도 노선이 지나갈 예정으로 공사 중 및 철도 운행 중 진동이나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KR), SG레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부여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7m이상, 주차공간 높이는 2.1m이상임.
- 본 단지는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동측에는 공동주택(A19BL), 서측에는 수변공원용지, 남측에는 공동주택(A44BL) 및 학교용지, 북측에는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남측부분(407동, 408동) 고등학교 예정부지 조성시 사업부지 보다 높게 조성될 수 있어 고저차 부분은 사면, 옹벽 및 조경석 쌓기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고등학교 부지조성 계획고는 변경 될 수 있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 램프인접세대 등)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어 계약 하시기 바람.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구조물, 야간경관용조명, 위성안테나, 통신중계장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태양광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보안등 조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대, 휴게시설 및 산책로 등 주민공동이용 시설물과 인접한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를 변경될 수 있음.
- 조경 식재·시설물과 인접한 저층세대 및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한 일부세대(입주 전 현장방문하여 확인) 등은 입주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함.
- 자전거보관대, 옥외 생활자원보관소가 설치됨에 따라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위치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위치변경 요청 불가함.
- 자전거 보관대 및 생활자원보관소 시설물의 설치 개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 및 상위계획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의 조정계획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부대시설 냉·난방용 실외기 및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며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동출입구 형태는 단지지형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다르게 디자인 될 수 있음.
-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지붕 및 주변에는 해당 시설의 배기팬 및 실외기 등이 다수 설치되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음.
- 우편함은 각 동 1층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고, 동 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무인택배보관소는 각 동 지하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고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용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운영방식 및 관리비 부과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등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천장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먼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내 외부 마감수준은 인허가도면, 모형, 공동주택 내 유니트 등 분양 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시공되며 이 외의 추가적인 마감요청 등은 제시할 수 없음.
- 본 현장의 단지 내 도로등의 레벨은 분양시점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계획으로 택지준공 시 도로의 레벨 등이 변경 될 경우 레벨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모형도에 표현된 단지 외관의 BI(로고)등의 크기 및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에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임.
- 입주 후 신속한 하자상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을 A/S센터로 무상 사용할 수 있음.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부대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노출부위 주변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전기모터를 이용한 흡출기 및 옥상난간대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등이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분진,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층 세대는 자연·급기를 위한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방범, 프라이버시, 소음관련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 1층 세대(401동(103호, 104호), 402동(101호, 103호), 403동(103호), 404동(103호), 405동(103호), 407동(103호), 408동(101호), 409동(101호))에 한하여 제연팬을 드라이 에어 리어와 접해있는 소음, 진동 발생, 미관 저해, 환기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후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03동 1층 104호 거실 전면부에 기계실 드라이 에어리어가 설치되어(위치 이동 불가) 경관 및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선은 동별, 라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홀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가구는 주방가구, 신발장, 복도장만 설치됨.
- 경로당에 설치되는 가구는 주방가구, 신발장, 반침장(시스템선반)만 설치됨.
- 다함께 돌봄센터에 설치되는 가구는 주방가구, 신발장만 설치됨.
- 주민카페에 설치되는 가구는 주방가구, 불박이의자만 설치됨.
- 골프연습장에 설치되는 가구는 신발장, 탈의실 개인락카, 음수대만 설치됨.
- 피트니스센터의 운동기구와 경로당 및 작은도서관의 비품은 준공 후 LH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등 이동식기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아파트 주차대수는 지하주차장 788대(장애인 전용주차구역 20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40대(급속충전 1대, 완속충전 39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3대(일반형 주차구역 2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대)로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에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돌봄시설,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어린이 승하차장(키즈스테이션)이 설치될 예정임.
- 계절창고의 공간 및 수납함은 각 세대당 제공되지 않으므로 추후 관리사무소와 사용을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람.
- 계절창고는 동별로 수납함의 개수가 차이가 있으니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생활자원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주변 쉼터, 생활자원보관소 등의 위치를 확인 바라며 추후 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401동과 409동 사이에 주출입구가 설치되며, 401동, 409동 주변으로 회전차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인한 소음 및 불빛등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근 세대는 계약 팸플릿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어린이 승하차장(키즈스테이션)을 설치 예정이며 이에 인접한 세대에 소음, 분진, 불빛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교통편의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음.
- 필로티 옆세대 및 위층 세대는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 위층 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407동, 408동 저층세대는 고등학교 예정부지 조성시 옹벽 및 조경석 쌓기 설치 등으로 사업부지 보다 높게 조성될 수 있어 조망권이 차단될 수 있음.
- 지붕층 난간대는 추후 안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날개벽 시공 등 현재 입면과 다를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도로와 단지간의 고저차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의 외벽이 노출되고 외벽의 마감재는 스타코, 알루미늄 시트, 화강석 등으로 혼용되어 시공되며, 지하주차장 상부 성토구간으로 인하여 외벽에 배수 드레인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분의 도로는 인접한 A19BL(운정자이시그니처) 단지출입구와 마주하고 있어 출퇴근 시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주변환경,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세부디자인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재료, 형태, 크기, 재질, 색채, 위치, 패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며, 해당 공법 적용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북동측 교차로는 교통영향평가서 심의결과에 의하여 교통이 원활하도록 우회전 진입 가감속차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여건 및 제한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생활터리 또는 철재울타리 등으로 설치 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재 단지 내 조경설계 진행 중으로 추후 식재 및 시설물, 포장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부대시설 옥상에 조경식재(세뎀류) 계획되어 있으며, 유지관리 및 사용을 위한 접근 시설이 없음. 또한, 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관련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각 동 일부 전·후면 조정공간에는 곡목, 관목, 등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추진과정 및 소방관련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 동지하에 집수정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음.
- 단야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됨.
-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환기시설 급·배기용량에 따라 드라이에어러 크기가 조정 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403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전원공급용 개폐기는 403동 주변 녹지에 설치될 예정이며, 상가 전원공급용 변압기는 상가주변 녹지에 설치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은 아파트 외벽에 축리용 피뢰침이 설치될 수도 있음.
- 아파트 내 주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401동, 402동, 403동, 404동, 405동, 407동, 408동)되며, 주변 환경(일광 발전효율, 음영 간섭 여부 등)에 따라 설치 위치, 용량, 규모 등 견본주택 설치 단지 모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일부동 지붕층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401동, 402동, 403동, 404동, 405동, 407동, 408동)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 및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인접 고층세대는 태양광 패널의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충전설비는 급속충전(1대)/완속충전(39대)가 설치 될 예정되며, 전기차충전설비의 이동 및 추가설치는 불가함.
- 일부세대에서 인근동 옥상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설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 등이 보일 수 있음.
- 405동 옥상(옥탑층)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출입구에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임.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1층 및 최상층 계단실, 생활자원보관소, 단지 내 출입구 등에 CCTV가 설치됨.
- 신속한 주차유도와 주차 가능 공간 및 차량 주차 위치 확인이 가능한 AI 주차유도시스템 적용 예정임.
- 「방충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401동, 404동, 405동, 406동, 409동의 옥상과 지하주차장 헬름-#5, 헬름-#6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안테나를 지하층, 데크층 및 옥외에 설치할 예정임. (전파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상에 안테나를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마감재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펌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동등 및 성능향상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펌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소품 등은 전시품임)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재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 펌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재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내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세대 타일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
-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환기를 해야하며, 욕실환기 미비, 거실, 주방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은 결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습적 사용을 자제하시고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람.
- 펌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바닥재재(강화합판마루), 주방가구, 조명기구, 소화용 장비 및 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펌플릿 및 사이비 견본주택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증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자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내부에 수도동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함.
- 실외기실에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한 응축수 및 우천시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함.
- 욕실 내 설치되는 샤워실의 유리문 크기는 사용자의 체격에 따라 사용상 불편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공조를 위한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입주자가 설치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은 실내구조(폭, 높이, 깊이 등) 및 형태에 따라 배치 불가능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등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필로티 위층세대(401동, 402동, 403동, 404동, 405동, 406동, 407동)는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임.
- 완강기 설치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아래 세대로 탈출 가능한 바닥설치형 피난사다리가 시공될 예정이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래 세대로 탈출 가능한 바닥설치형 피난사다리의 커버가 발코니 바닥에서 돌출되어 사용상 불편할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세대 아트월 부위는 경량벽체로 별도 보강하여 경량벽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 일반가구, 주방가구(아일랜드 장 포함)의 측면, 후면, 바닥, 천장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및 결로저감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타일나누기도 등의 시공은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형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가구 후드장 상부는 수납이 제한적임.
- 발코니(다용도실 및 실외기실 등)는 대용량의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및 건조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다용도실 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빨래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컨으로 점등됨.
-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전개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물건 적치가 불가함
- 세대 내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므로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인접세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 임을 인지해야 함. 또한, 천장에는 상부 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1층 및 필로티 위층 세대의 경우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 상부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
-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 상부에 전열교환기가 하향식 피난구 위치에 따라 층별 교차 설치 될 예정임.
- 바닥에 설치한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은 바닥에서 돌출되어 사용시 불편함이 있으며, 천장 하향식 피난구 접합부분의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 위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바닥자재(강화합판마루)는 추후 관련 법규에 의한 지급자체 선정업체에 따라 색상과 무늬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방문의 손개입방지장치는 각 침실 및 화장실의 문짝에 실내외 2면으로 설치가 됩니다. 단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의 문짝에는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부 욕실 바닥에 설치되는 배수드레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조정 될 수 있음.
- 세대 다용도실 천장은 PVC 천장재로 시공예정임.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 내 PL창호 손잡이의 형태 및 크기는 해당업체의 단종 계획 등에 따라 본 시공시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현관 중문은 업체선정에 따라 형태 및 색상이 본 시공시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음.
- 세대 가스콕탐은 가스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견본주택 전시품과 실제 시공모델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함.
- 급수계량기함은 E/V공 공중부 PD내부에 설치되어 있음.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및 바닥 드레인은 천장 또는 벽에 노출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실시공 시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및 침실1에 매립되는 기본형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므로 실내기 일부 제품에 따라 매립형박스가 노출될 수 있음.
- 타일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내부에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실외기실에는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1층환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이후, 입주인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시스템에어컨 추가 설치 요청등은 불가함.
- 주방 하부장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는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거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음.
- 욕실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부부욕실 바닥 배수구는 샤워부스내 1개소 설치됨.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내부순환모드(공기청정모드)가 지원되지 않음.
- 세대분전반이 침실2(74A1, 74A2, 84A1, 84A2) 도어 후면 벽면에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발코니 조명기구와 거실 스피커는 천장형으로 설치될 예정임. 단, 최상층의 경우 천장 단열 여건에 따라 벽부형으로 설치될 수 있음.
-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됨.
- 세대 내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거실 및 침실 등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기타층은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됨.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차함,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 도서 및 견본주택과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 보조주방 옵션 선택시에 한하여 설치됨.
- 스마트홈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날씨(온도, 미세먼지정보)가 표현될 예정임.



- IoT 비상호출버튼(부부욕실 설치) 및 IoT 자석감지기(현관 설치)는 무선방식으로 배터리 교체형임.
- 세대 분전함은 산업통신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 방법 특별 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통신 단자함 설치 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처리 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므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됨.
- 세대 발코니 벽면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됨.
- 소방관련법에 따라 제연설비는 엘리베이터 전실에 제연급기그릴이 설치됨.
- 엘리베이터 전실에 제연급기그릴이 작동시 소음이 발생됨.
- 소방관련법에 따라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해당 교육청	비고
초등학교	(가칭)운정4초등학교	'26.03월(예정)	파주교육지원청	-
중학교	(가칭)운정5중학교	'26.03월(예정)		
고등학교	(가칭)운정4고등학교	'27.03월(예정)		

- \* 초등학교는 원통학구역인 (가칭)운정4초등학교 설립을 통해 배치 예정이나, 향후 학교설립 추진상황에 따라 (가칭)운정4초등학교의 2026.03월 개교가 불가할 경우 인근학교에 임시배치될 수 있습니다. 임시배치될 경우 통학대책 등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중학교는 교하·운정중학교(교하중, 두일중, 심학중, (가칭)운정5중) 배치 예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선 지방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고등학교의 경우 파주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각 고등학교에서 정원 및 결원의 범위내에서 선발결과 전학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학교별 정원 현황 및 학생, 학부모 선택에 따라 타시군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 고등학교의 경우 파주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각 고등학교에서 정원 및 결원의 범위내에서 재입학 및 편입학, 전입학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입학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 학생의 성적 그리고 학교별 정·현원과 학교별 고입선발계획에 의거 진행되며, 고입선발 과정에서 타시군으로 고등학교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고등학교 학교군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운정3택지개발지구 내 설립계획 중인 학교(유치원 포함)는 향후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및 지침에 따른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설립 추진이 가능하고, 학교(유치원 포함) 설립계획은 투자심사 승인여부,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행상황, 인근 공동주택 분양공고율, 실입주 상황, 학교 신설 교부금 예산 확보 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 지구내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구 내 학교 등 교육시설 용지(유치원 포함)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향후 타 용도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인근 학교설립으로 인하여 인접 동의 경우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원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치수이며, 각 타입별 치수·면적은 층수에 따른 벽두께 차이 등으로 인해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모형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임.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 출입이 불가함.

###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 소음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관련 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관련 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해당없음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해당없음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름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사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대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지붕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스마트홈생활정보기)	적용
고효율LED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 7. 마감자재 목록표

- 「주택법」 제54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사이버)건보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건보주택,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구 분	타입별 적용 여부			
	74A1	74A2	84A1	84A2
현관	현관도어록		디지털형	
	세대현관문		칼라강판 또는 분체도장급	
	바닥		포셀린 타일	
	마루귀틀		엔지니어드스톤	
거실/주방	신발장		데코시트	
	벽지/천장지		실크벽지	
	아트월		포셀린타일	
	바닥		강화합판마루	
	주방벽		도기질타일	
주방가구	문짝	데코시트		
	상판	인조대리석(MMA)		
침실1,2,3	문틀/문짝		데코시트	
	바닥		강화합판마루	
	벽지/천장지		실크벽지	
욕실	벽		도기질타일	
	바닥		자기질타일	
	천장		ABS판넬	
주방설비	레인지후드		침니형	
	가스레인지		3구형 쿡탑	
	음식물탈수기		설치	
	싱크용절수기		콧센서식	
욕실설비	욕조(공용욕실)		펠아크릴	
	욕조수전(공용욕실)		선반형(안마헤드)	
	샤워수전(부부욕실)		수납형(레인형헤드)	
	양변기(공용)		준원피스형 + 비데	
	양변기(부부)		비데일체형	
	거울수납장		2도어 슬라이딩형	
	기타설비		스마트폰 거치대 겸 휴지걸이	
조명설비	식탁등		LED 등기구	
	각실 조명기구		LED 등기구	
	주방등		LED 등기구	
	욕실등		LED 등기구	
	현관센서등		LED 등기구	
	드레스룸등		LED 등기구	
배선기구	스마트홈생활정보기		설치	
	스위치, 콘센트류		설치	
정보통신설비	세대단말기(월패드)		설치	
	IoT 비상호출버튼(부부욕실)		설치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		거실, 침실1		
세대 환기시스템		설치(1층)		
비확장 발코니	바닥		자기질타일	
	창호		합성수지제	

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03,189,751	
	기간이자	5,141,317	
	필요적 경비	101,199	
	그 밖의 비용	7,014,236	
	<b>계</b>	<b>115,446,503</b>	
건축비	토목	토공사	1,586,182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
		석축공사	70,714
		우·오수공사	801,807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8,615
		도로포장공사	404,315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13,019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6,438,478
		부대시설공사	263,446
		<b>계</b>	<b>9,586,576</b>
	건축	공통가설공사	2,282,464
		가시설물공사	5,305,564
		지정 및 기초공사	5,238,844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24,369,662
		용접공사	-
		조적공사	2,580,507
		미장공사	-
		단열공사	4,644,867
		방수·방습공사	2,581,564
		목공사	4,320,220
		가구공사	1,973,820
		금속공사	866,337
		지붕 및 환통공사	269,525
		창호공사	6,413,310
		유리공사	1,265,794
		타일공사	3,099,096
		돌공사	4,076,188
		도장공사	1,819,244
		도배공사	1,299,294
		수장공사	1,509,882
		주방용구공사	-
잡공사	1,002,375		
<b>계</b>	<b>74,918,560</b>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175,261	
	급탕설비공사	927,444	
	오배수설비공사	5,160,035	
	위생기구설비공사	2,890,767	
	난방설비공사	3,357,645	
	가스설비공사	752,384	
	자동제어설비공사	-	
	특수설비공사	76,328	
공조설비공사	2,592,753		
<b>계</b>	<b>16,932,616</b>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9,353,185	
	정보통신공사	4,548,884	
	소방설비공사	9,804,602	
	승강기공사	1,762,095	
<b>계</b>	<b>25,468,766</b>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4,899,357	
	이윤	9,021,028	
<b>계</b>	<b>13,920,386</b>		
간접비	설계비	2,801,872	
	감리비	1,058,485	
	일반분양시설 경비	2,178,589	
	분담금 및 부담금	1,756,667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3,909,986	
<b>계</b>	<b>7,845,243</b>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8,281,224	
<b>합계</b>		<b>286,260,230</b>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명문감정평가법인	나. 태평양감정평가법인
109,047,262,115 원	109,416,913,850 원	108,677,610,380 원

9.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사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가산비												
계	기간이차	말뚝박기공사비	흙막이공사비	기타비용	계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전환경 주택건설 추가비용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지하주차장 증고증가 추가비용	사업승인부가조건가산비		
						법정초과복리시설설치비용	공동주택성능등급가산비	홈네트워크	에어컨냉매배관		초고속통신	기계환기설비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안전관리비	사전청약소요비용
12,952,500	5,433,161	5,821,889	1,590,507	106,943	19,318,948	1,929,815	1,340,967	4,347,309	463,057	342,748	1,022,762	2,399,893	76,026	621,416	167,978	296,191	6,310,784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파주운정3 A20BL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420-82-005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건축,기계,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동아건설(주) (106-81-33808)</li> <li>- ㈜대지건설 (122-86-00172)</li> <li>- 강산건설(주) (220-81-20370)</li> <li>- ㈜한양건설 (408-81-09859)</li> </ul> </li> <li>■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가이엔지 (135-81-61582)</li> </ul> </li> <li>■ 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광네트웍정보 (214-86-36421)</li> </ul> </li> <li>■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정</li> </ul> </li> <li>■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정</li> </ul> </li> </ul>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건축,기계,토목,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li> <li>- 마인앤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li> <li>-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li> </ul> </li> <li>■ 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li> </ul> </li> <li>■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디엔지니어링(주)</li> </ul> </li> <li>■ 계약금액 : 10,910,790,000원</li> <li>■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신화에프이원</li> </ul> </li> <li>■ 계약금액 : 773,008,173원</li> </ul>

11. 파주운정3 A20블록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 LH 파주운정3 A20블록 주택전시관

- **위치안내**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2번지  
※ 건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가람마을 7단지 맞은편 LH 파주 주택전시관
  - 지하철노선 : 경의중앙선 운정역 하차 후 1번 출구
  - 버스노선 : 운정역 1번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 80A, 89 (가람마을7단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 차량 이용 시 반드시 "가람마을7단지(한라비발디) 정문 건너편 입구로 입차 하셔야 합니다.
- **운영기간** : 주택전시관 관람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 **운영시간** : '24.10.04.(금) ~ '24.10.13.(일) 10:00~17:00(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운영기간 내 주말, 공휴일 방문 가능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분양문의**

- 주 소 : www.pajua3a20.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파주운정3 A20블록 주택전시관 : 031-941-0858 (10:00 ~ 17: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